

이달의

특 집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안내

- 국세청 -

-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 \*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
  -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 \* (추가 기능)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 \* 홈택스 연말정산 접속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I. 연말정산 일정 안내입니다.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항 목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1. 1. 15. ~ 2. 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1. 1. 20. ~ 2. 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1. 2. 1. ~ 2. 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0. 12. 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1. 1. 20. ~ 2. 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21. 3. 10.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 II.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①공공임대주택 월세액, ②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③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년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④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추가 수집 · 제공 자료	수집처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토지주택공사 등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신용카드사 등 보험회사 등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등

[접근경로] 홈택스서비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 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내 용	일 정
자료제출기한	원칙	'21. 1. 7. 22시
	부득이한 경우	'21. 1. 13. 20시
	수정 · 추가 제출하는 경우*	'21. 1. 15. ~ 1. 18.

\*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1. 18.은 20시까지)입니다.

※ 공제증명자료 제출방법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번) 참조

## 2. 신고 절차 개선

-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 \* (1인 가구)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 2단계로 신고 완료
- 그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 · 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3. 모바일 서비스 확대

- (고도화 완성) '18년 도입 이후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 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공제신고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 ·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 (기존)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 수정은 PC에서만 가능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 · 수정 ·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신청 / 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Ⅲ.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1.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맞춤형 안내

-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검색 방식	도움말 제공 유형
상담 도우미	버튼방식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 제공
핵심어 연말정산	하이퍼링크	주요 항목 100개를 선정하여 하이퍼링크 기능을 삽입한 한글문서로 제공
자가 점검표	질의·응답형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에 Y/N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질의·응답 모음집	서술형	세법, 전산시스템 등 각종 도움말 자료를 정리하여 책자 형식 서술형으로 제공
계산사례	서술형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제공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2.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 도입

-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21. 1. 15.(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에 챗봇 버튼을 새로이 추가하여,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 \* ‘챗(Chat, 문자대화)’ + ‘봇(Bot, 로봇)’의 결합어로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 3.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

-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시리즈(15편)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주소 :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 이번 영상은 납세자의 상담문의가 많았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실용적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 '20년 1월 최초 제공 이후 납세자 수요에 맞춰 수정·공개 ('20. 12. 20.)

- 특히, 공개 이후 다수 댓글을 모니터링 후 피드백 영상을 신속 제작·공개하는 「1:N방식」의 쌍방향 소통\*을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 1. 15. 공개 예정)

\* (기존) 댓글에 대댓글 답변(1:1소통) → (개선) 다수 댓글 주제를 피드백 영상 답변(1:N소통)

### 4. 다양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그 간 축적된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코너)에서 제공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산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전산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원격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IV.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관련 가산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그간 유예되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

##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 성실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 연간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

-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

###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 2 안경구입비 자료

-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

###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

###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사용처	자료제출처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②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근로 복지공단
④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 참고 2. 홈택스에서의 제출 방법

- 영수증 발급기관은 기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공제증명자료 제출
  -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오류 내용 확인
    - 제출대상이 100건, 오류건수 10건인 경우 오류 없는 90건은 정상 제출됨
    -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예) 당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있어 이를 수정한 후 10건만 다시 제출하면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참고 3. 제출기관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자료제출 대상은 개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정보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로만 작성된 경우라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생년월일만 기재 시 오류)
- 제출한 자료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자료제출기간에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수정 제출한 자료가 최종자료로 구축됩니다.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출 현황조회'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의 제출자료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사람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학원·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 자료만 제출대상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

- 홈택스에서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신청할 필요 없음)

## 참고 4. 개정세법 내용

### 용어 해설

- ◇ 과세제외 :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I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li> <li>-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li> </ul>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	-------------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	--------------------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 \* 연간 2천만 →연간 3천만 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	---------------------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 2,500만 →3,000만 원 이하,      \*\* 190만 →210만 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	------------------------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	------------------------------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월	3월	4~7월	8~12월
◇ 신용카드	15%	30%	80%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80%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액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①전통시장 사용분, ②대중교통 사용분, ③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8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액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4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15%
1.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700만 원)	(900만 원)	
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3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2%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5.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1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부당공제 사례
①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 + 추가공제)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
③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 의료비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li> <li>○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li> </ul>
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li> <li>*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li> </ul>

\* ①, ②, 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 참고6. 연말정산시 점검 사항

###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내 용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 원 한도)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330만 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 원 초과자는 28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 원(50세 이상자는 600만 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 12. 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 12. 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참고 7. 주요 질의·응답 자료

모든 질의·응답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6.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 소득금액 요건 :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 × 10%(또는 12%)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을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14년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 원	300만 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기 타	500만 원	-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II.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공제 가능
	그 외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임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 6. 24.)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 ~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한도 : 150만 원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19.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모바일 웹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공제항목 선택 후 간소화자료 제출
- ◇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모바일 웹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

20.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2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23.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정보 ◎

### I. 세무용어의 이해

#### 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유의사항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소득 종류	주요특징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

• 학교의 외부강사 소득구분

사 례	소득 구분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 법원의 판결·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
  -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소득종류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근로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2. 일용근로소득이란?

▶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87,000원 : 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제출시기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다음해 1월 31일

###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 유의사항

##### ■ 근로소득 귀속연도

구 분	귀속시기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지급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계량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연말정산 이후 급여 소급인상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연차휴가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연봉외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인수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 받는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4.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비과세소득 예시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 : 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의 건설현장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4년 ~ '16년 귀속	과세표준	'17년 귀속	과세표준	'18년 ~ '20년 귀속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이하	35%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3억원이하	38%
		5억원 초과	40%	5억원이하	40%
				5억원초과	42%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II. 연말정산의 이해

###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 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 제공
- (3개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 2018년부터 근로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요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

◎ 연말정산시 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 (맞춤형 도움말 제공) 연말정산 도움말 코너를 신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선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도모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종류		제공 내용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20.10.30일 제공(1~9월 사용금액)
	결제 계획 수립 지원	결제 Tip, 유의사항, 3년간 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계산의 편의 제공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모의계산 기능 제공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간편제출서비스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근로자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용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USB, 파일 다운로드 > 회사 프로그램 업로드 공무원, 대기업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은 연말정산을 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근로자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다.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기관의 전화번호를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안내

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페이지(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마. 2020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01.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홈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자녀('02.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li> <li>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li> <li>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li> </ul>
Q.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li> </ul>
Q.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데?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li> </ul> </li> </ul>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gt;연말정산간소화&gt;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li> <li>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li> <li>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li> </ul>
Q.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A.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택스&gt;신청/제출&gt;연말정산간소화&gt;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li> <li>자료제공자가 모바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 [신청/제출&gt;연말정산제공동의&gt;제공동의신청]에서 기본 사항입력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동의 신청</li> </ul>

Q.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는지?
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 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li> <li>○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li> </ul>

####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금액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 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5.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 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한도) ① +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특별 소득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p>*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lt;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li> <li>-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li> </ul> <p>- '15.1.1. 이후 차입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치식 &amp; 고정금리 : 1,800만원</li>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li> <li>•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기타 : 500만원</li> <li>• 상환기간 10년 이상 &amp;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li> </ul> <p>&lt;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li> <li>-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li> <li>-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li> </ul> <p>&lt;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gt;</p>
	공제 한도액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 만료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 벤처기업 출자 : 100%.70% .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그 밖의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p>· 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2월</th> <th>3월</th> <th>4~7월</th> <th>8~12월</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d>30%</td> <td>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td> <td>30%</td> <td>60%</td> <td></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td> <td>30%</td> <td>60%</td> <td></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d>80%</td> <td></td> <td>40%</td> </tr> </tbody> </table> <p>※ 종고자 신용카드 등 구입금액은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은 제한,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li> <li>-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630만원)</li> </ul>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중견기업 3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한도	<p>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li> </ul>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 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 13년 취업청년 : 100% - '14~' 15년 취업자 : 50% - '16~' 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출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제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0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able>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7세 이상)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 금 계 좌	과학기술인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 제 율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50세미만	50세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5.5천 만원	400만원	600만원	15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 이하 400만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				
1.2억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12 %						
특 별 세 액 공 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의 료 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20%)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 본인, 65세이상, 장애 인, 난임시술비, 건강 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난임시술비는 20% 공 제율 적용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다. ㉠ + ㉡ + ㉢ ≥ 총 급여액 × 3% > ㉠ + ㉢인 경우	㉠ + ㉡ + min(㉢ - 총 급여액 × 3%, 700만원) ㉠ + ㉡ - (총급여액 × 3% - ㉢) ㉠ - (총급여액 × 3% - ㉡ -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특 별 세 액 공 제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취학전아동, 초·중·고 생 : 1명당 300만원 한 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 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 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 서관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관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이내)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 지)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 본인, 장애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 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 한도 없음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 부 금	정 치 자 금 기 부 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기 부 금	정치 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근로 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기부 금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특 별 세 액 공 제	기 부 금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의 10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 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 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 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 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 수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 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 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 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음 요건 삭제		

###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 1.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text{근로소득금액} = \text{총급여액}^* - \text{근로소득공제}$$

$$* \text{총급여액} = \text{연봉} - \text{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유의사항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 ●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유의사항**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분	내용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한부모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I) 기본공제

<p>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p> <p>● 기본공제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li> <li>• 본인의 배우자</li> <li>•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li> <li>-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li> </ul> </li> </ul>
---

●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 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유의사항**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 유의사항**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 3. 연금보험료공제

<p>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li> </ul> </li> <li>●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없이 전액 공제</li> </ul> </li> </ul>
---

#### \* 유의사항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 2002. 1. 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소급기여금
  -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 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소급기여금 공제 비율			
귀속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제 비율	소득공제 되지 않음	납부금액의 50% 공제	납부금액의 100% 공제

■ 반납금 공제 여부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공제시기 : 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 지역가입·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19.3.20. ~ '20.3.12.까지 : 1.8%)
-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유의사항**

-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

나,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주택자금공제 한도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1,8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1,800만원	*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총 한도액 구분													
		• '15.1.1 이후 차입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 <th>상환기간 10년 이상</th> </tr> <tr> <th>고정금리이고 비거치</th> <th>고정금리 또는 비거치</th> <th>기타</th> <th>고정금리 또는 비거치</th> </tr> </thead> <tbody> <tr> <td>1,8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d>300만원</td> </tr> </tbody> </table>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12.31.이전 차입분 : 연 500만원&lt;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gt; 한도</li> <li>'11.12.31.이전 차입분 : 연 1,000만원&lt;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gt; 한도</li> <li>'03.12.31.이전 차입분 : 연 600만원&lt;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gt; 한도</li> </ul>															

■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한도)
- ※ 2014년~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조정'
-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채무자=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 분만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1998.5.22 ~ 1999.12.31 취득 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2003.1.1.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2007.2.28. 이후 연장분 부터 적용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5억원('14~ '18년까지 4억원) 이하 요건 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요건 충족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분양권의 범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4억원('13년 이전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 가격 산정 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 같이 계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청산금 납부 시</td> <td>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td> </tr> <tr> <td>청산금 지급 시</td> <td>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td> </tr> </table>	청산금 납부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지급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청산금 납부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지급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차입금의 범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그 차입일(차입요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 해당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할 것(2007.1.1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공제 배제사유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유의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승계당시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초과 여부 판단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됨

■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 2000.10.31.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환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참고]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상 황	공제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됨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 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14년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정(취득 당시 1주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
  - 2013년 이전에는 신주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 불충족)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

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 5. 그 밖의 소득공제

### (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제한없음('13년 이후)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연간 1천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3.1 이후 가입 시)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또는 15%) * 연 400(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36~105만원(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과세하지 않음	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소득으로 과세</li> <li>•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min (①, ②, ③)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li> <li>•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li> </ul>
추징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증명 시(개인연금저축에 한함)</li> <li>•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li> <li>•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li> <li>•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li> </ul>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지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단, 201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가능)

- 가입 대상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 납입액 및 공제 한도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중도해지
  -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는 폐지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청약저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 공제금액 한도

-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 유의사항**

■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청약저축)

-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 ※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연도 중에 중도해지

-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 판단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2020.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일정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직접 투자 등은 100%, 70%,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6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 유의사항**

- 출자 또는 투자방식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어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 해당

■ 소득공제 방법

-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19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9년, '20년, '21년 중 어느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text{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text{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

구 분	발 급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 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80%)
- 공제한도 : Min(연간 330만원\*, 총급여액의 20%)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80만원, 1.2억원 초과자 23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630만원 한도)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 ~ 7월 31일 사용분 80%)
-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20년 3월 1일 ~ 7월 31일 사용분 80%)
-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 7월 31일 사용분 80%)
-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3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 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 (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 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

■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26→내선1-1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출연시 소득공제 > 우리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적용)
-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 유의사항**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 인출

구분	내용
과세대상(인출금)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0원)
소득구분	근로소득
수입시기	해당 회사주주의 인출일
원천징수 방법	해당 법인이 인출금에 기본세율(6%~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 인출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금액

- 의무 예탁기간의 다음날부터 2~4년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둘다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

$$\text{소득공제액} = [ \text{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text{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times 50\%$$

※ 유의사항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⑤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거주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가입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대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만 있는 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
    - ①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으로서 연 납입한도 600만원
    -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15.12.31.까지 가입)
  - (소득공제액)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 소득공제 신청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5년 이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

(9)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 다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는 제외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다만, 2015년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유의사항**

- '13.1.1~'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I)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4.1.1., 경력단절여성 '17.1.1.) ~ '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청년 90, 그 외 70%(50%, 100%)\*세액감면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18년 이후	청년	소득세의 90%	5년	연 150만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16년~'17년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14년~'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2년~'13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 적용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회사에서 원천세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
- (감면세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2021.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50%를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 그와 친족 관계인 사람
- (감면신청)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

●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text{감면비율}$$

(2)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원) × 3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중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공제대상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3명 60만원, 4명 9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100의30②)

●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내용	공제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 × 12%(15%)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15%(난임시술비는 20%)
교육비		15%
기 부 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25%
	법정기부금	2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 5.5천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매월 징수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5%(연말정산시 재정산)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유의사항**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 → 연 700만원(50세 이상 연 900만원, 연금저축은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제외)로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 공제

※ 종전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2014년 이후)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요건

항 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①보험료	○	○	○	
②의료비	×	×	○	
③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④ 기부금	×	○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기부금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근로자 1명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 가능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봄

■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

-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 납세조합공제(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하는 때 다음해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text{납세조합공제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5\%$$

$$\text{*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 = \text{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 \times \frac{\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text{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 \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98.1.1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3)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1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2	연 100만원 한도	15%

\*1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2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공제시기 :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 \* 유의사항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19.6월부터 '20.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1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월별로 안분하지 않음)
  
-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나.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 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 '13년 귀속 이전 : 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자 → '14년 귀속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자 전체로 변경
    -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 \* 유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증명서류		국세청 제공여부*
	영수증 명칭	발급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약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기관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안경점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임대처)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산후조리원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공제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공제대상 아님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 비용	공제대상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진단서 발급비용	공제대상 아님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공제대상

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외국 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 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 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 유의사항**

■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300만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900만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900만원)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8.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8.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공제대상
○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라.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세액공제대상 한도

종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5% (1천만원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지정기부금*1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의 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기부금 유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30% 한도 기부금

■ 특별재해(재난)지역(선포 전·후 포함)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구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 해당 자원봉사구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

■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수 (2013년 이후 기부분부터)
정치자금기부금	○	×	×	-
법정기부금	○	○	○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	○	○	10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4)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유의사항**

■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